

#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공고 및 선거사무 추진일정 안내

1. 협회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등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선거사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5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1. 선거명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 2. 선거일시(예정)

2018. 1.23(화) ~ 1.24(수), 09:00 ~ 18:00

## 3. 선거장소(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

## 4. 선거권 자격(임원선거관리규정 제7조)

협회 정회원으로 다음 결격사유가 없어 선거인명부에 확정 등재된 모든 정회원  
- 결격사유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  
※ 회원이 정회원 월정회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받아 선거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피선거권 자격(정관 제9조)

협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당시 15년 이상의 협회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1) 협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2) 건축사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3) 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사람

## 6. 선거인명부 공고(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 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같음함.  
1) 기간 : 2017. 8.25 ~ 10.31  
2)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장소 : 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 온라인투표를 위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가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수정방법 등 홈페이지 게재)

## 7. 예비후보자 등록

1)등록기간 : 2017. 9.12(화) ~ 9.18(월), 09:00 ~ 18:00  
2)등록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본 협회 총무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3)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지참)

## 4)등록서류

- ①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서식)
- ②입후보 소견서 (A4규격 2페이지 이내)
- ③이력서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사진(반명함판 규격) 부착]
- ④서약서 (별지서식)
- ⑤선거기탁금 : 회장선거 기탁금의 50% (1,500만원)  
납입계좌 : 국민은행 484237-01-008375, 대한건축사협회  
※ 납입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후보자등을 사퇴 또는 후보자들의 귀책사유로 후보등록무효, 당선무효, 투표무효,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특기사항(반드시 숙지 요망)

협회 정관 제21조의2제5항 및 제6항과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9. 선거운동

- 1)후보자등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후보자등'이라 함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2)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2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②예비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③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이 경우 선거인을 방문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함.  
④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 3)후보자등과 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선거운동원,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됩니다.

## 10.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성명	사무소명
위원장	김영수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위원장	정명옥	팬타그램 건축사사무소
위원	김윤	(주)연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배기업	명신 건축사사무소
	성낙기	삼중 건축사사무소
	손근익	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왕한성	(주)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
	이영호	(주)새롬 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태중	(주)마당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재희	건축사사무소 석산

※ 기타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02-3415-6811~2)

<붙임> 1)본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추진일정, 2)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협회홈페이지 게재), 3)선거관련서식(협회홈페이지 게재)